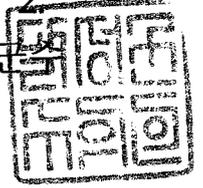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350
----------	------

제출일자 : 2017. 2.

제출자 : 달성군



□ 제안사유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 우리군은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대구시·근로복지공단·기업체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어린이집 건립 후,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의 지자체 협업형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유치하여 참여업체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문양역 인근 마천산 방문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마을내 차량 통행 애로 등 방문객과 주민들간의 마찰이 잦음.
- 불법 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통행 방해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
- 이에 따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갈등 해소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주요골자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 어린이집 개요

- 시 설 명 : 비슬어린이집(가칭)
- 위 치 : 달성군 유가면 봉리 600번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847.34㎡, 건축연면적 856.18㎡(지상3층)
- 건축주(대표기업) : 대동금속(주)
- 참여기업 : 대동금속 외 20개사 (의무사업장 3개사 포함)
- 시설건립비 : 2,060백만원

(단위:천원)

총 소요액	대구시	근로복지공단	기업체
2,060,000	300,000	1,500,000	260,000

- 운영비용 부담 : 기업체 부담
- 의무 운영기간 : 7년

- 부지제공 및 건축물 소유권 등

- 부 지 제 공 : 달성군 소유 부지 무상 사용
- 건축물 설치비 : 대구시·근로복지공단·기업체가 사업비 공동부담
- 건축물 소유권 등 : 준공과 동시에 달성군에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
- 건축물·부지 무상사용 수익대상 : 대동금속 외 20개사
- 공공청사용지 무상사용 및 건물 기부채납 내역

구 분	토 지				건축 연면적 (기부채납 대상)	무상사용 수익대상
	위 치	소유자	면적(㎡)	무상사용 면적(부지)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	유가면 봉리 600	달성군	1,926㎡ (583평)	847.34㎡ (256평)	856.18㎡ (지상3층)	대동금속 외 20개사 (컨소시엄 참여 사업장)

○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다사읍 문양리 산18-2, 343번지(2필지)
- 기 간 : 2017. 2. ~ 2017. 12.
- 면 적 : 5,120m²(100면)
- 사업비 : 750백만원(토지매입비 440, 공사비 310)

- 붙 임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1부. 끝.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 득	계	9 (31)	72,679.22	47,233,917	2 (2)	5,976.18	2,074,706	11 (33)	78,655.4	49,308,623	
	1.매입	토지	4 (31)	58,080	14,157,988	1 (2)	5,120	14,706	5 (33)	63,200	14,172,694
		건물	2	1,126.22	75,929				2	1,126.22	75,929
	2.교환										
	3.기타	토지									
		건물	3	13,473	33,000,000	1	856.18	2,060,000	4	14,329.18	35,060,000
처 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답	체	다사읍	매곡리	919-1	2,430 (연면적)	2,430 (연면적)	7,600,000,000 (사업비)	2018.	노인복지관 건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6.12. 의회 의결
	전	체	다사읍	매곡리	919-2								
2	체	체	유가면	상리	410B/2L	45,184	45,184	13,103,360,000	2017.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	-	LH공사	"
3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7	208	208	20,675,200	2017	회원명곡 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조성	화원읍 천내리 884	성순옥	"
4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8	1,243	1,243	123,554,200			수성구 황금동 368	박영숙	
5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9	1,124	1,124	111,725,600			화원읍 천내리 766	김종렬	
6	대	대	화원읍	명곡리	20-1	972	972	156,103,200			회원읍 천내리 783	김윤희	
7	목	목	화원읍	명곡리	20-2	754	754	74,193,600					
8	답	답	화원읍	명곡리	21	175	175	14,875,000					
9	답	답	화원읍	명곡리	24-2	555	555	47,175,000					
10	전	전	화원읍	명곡리	28	1,752	1,752	148,920,000					
11 (건물)	대	대	화원읍	명곡리	20-1 20-2	987.6	987.62	3,029,16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2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0-2	34	34	1,689,800	2017	도동서원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구지면 도동리 69	김길동	2016.12. 의회 의결
13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1-1	71	71	3,528,700			구지면 도동리 171	김태육	
14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2-1	52	52	2,584,4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15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2-2	36	36	1,789,2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16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	155	155	4,340,000			달서구 이곡동 1332	김병의 외2	
17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3-1	176	176	8,747,200			구지면 도동리 56	김영식	
18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2	244	244	12,126,800			달서구 이곡동 1332	김병의 외2	
19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4-1	27	27	1,341,9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20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5-1	154	154	7,653,8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한용	
21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5-2	267	267	13,269,900			달서구 이곡동 1332	김병의 외2	
22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6-1	166	166	8,250,2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23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6-2	96	96	4,771,2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4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314	314	25,496,800	2017	도동서원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구지면 도동리 69	김희석	2016.12. 의회 의결
25	전	전	구지면	도동리	54-1	979	979	48,656,3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희석	
26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5	165	165	11,484,0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27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7	1,471	1,471	102,675,8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28	임	임	구지면	도동리	58	602	602	927,08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29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463	463	32,965,600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47	김윤화	
30	임	임	구지면	도동리	60	347	347	405,990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47	김윤화	
31	전	전	구지면	도동리	71	107	107	8,688,4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희석	
32	대	대	구지면	도동리	71-3	65	65	2,138,5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동	
33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54-1 71	81.4 (연면적)	81.4 (연면적)	38,500,000 (개별주택가격)			구지면 도동리 54	김희석	
34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1 71	32 (연면적)	32 (연면적)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35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25.2	25.2	34,400,000 (개별주택가격)	2017	도동서원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47	김윤희	2016.12. 의회 의결
36	답	답	현풍면	하리	250-4	122	122	53,875,200	2017	보건소 이전·신축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 210	윤점준	
37 (건물)	대	대	현풍면	하리	253-2	10,383 (연면적)	10,383 (연면적)	23,400,000,000 (공사비)	2018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답	답	현풍면	하리	250-4								
38 (건물)	대	대	옥포면	교항리	2961	660 (연면적)	660 (연면적)	2,100,000,000 (사업비)	2017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건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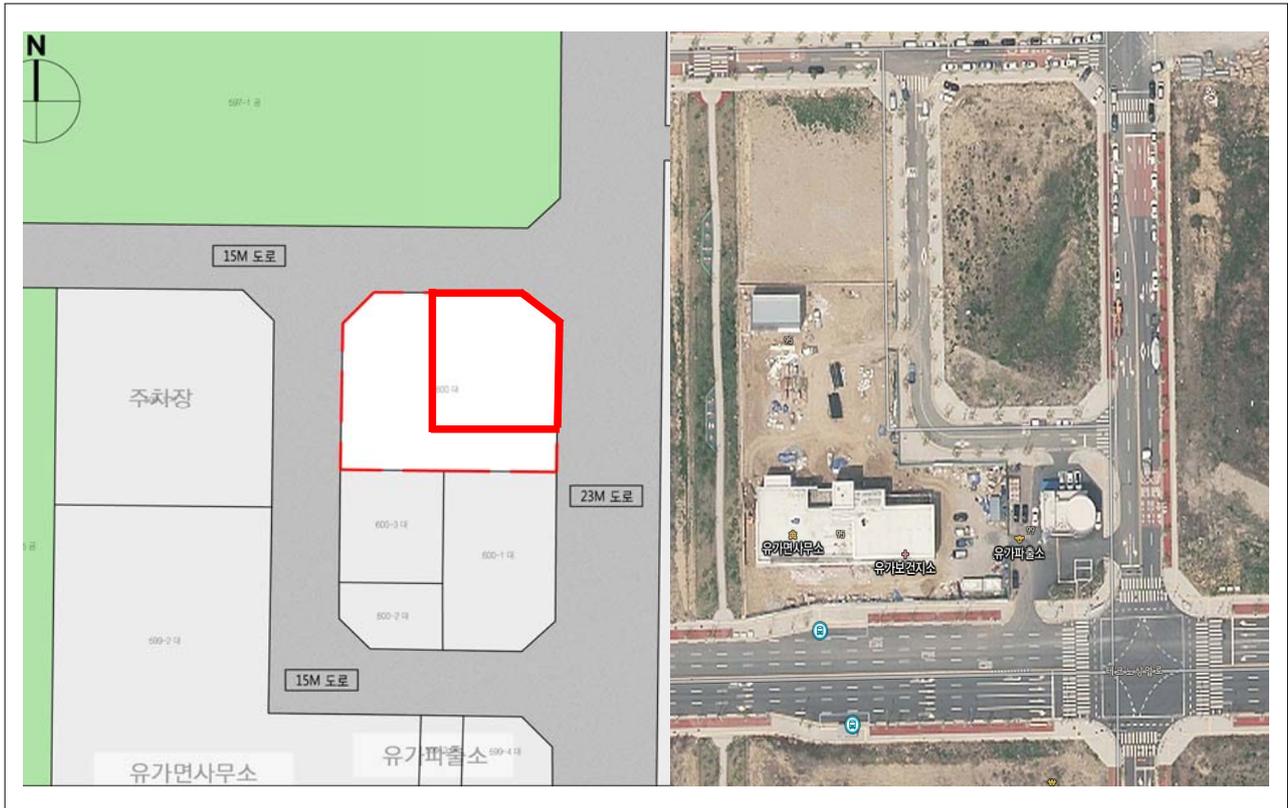
□ 추 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대	대	유가면	봉리	600	847.34	856.18 (건축연면적)	2,060,000,000 (시설 건립비)	2017년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 (기부채납)	대동금속 외 20개사 (기부채납자)		
2	임	임	다사읍	문양리	산18-2	4,135	4,135	11,288,550	2017년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서울 송파구 방이동89 올림픽선수@ 325동902호	정병규	
3	전	전	다사읍	문양리	343	985	985	3,417,950					

위 치 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600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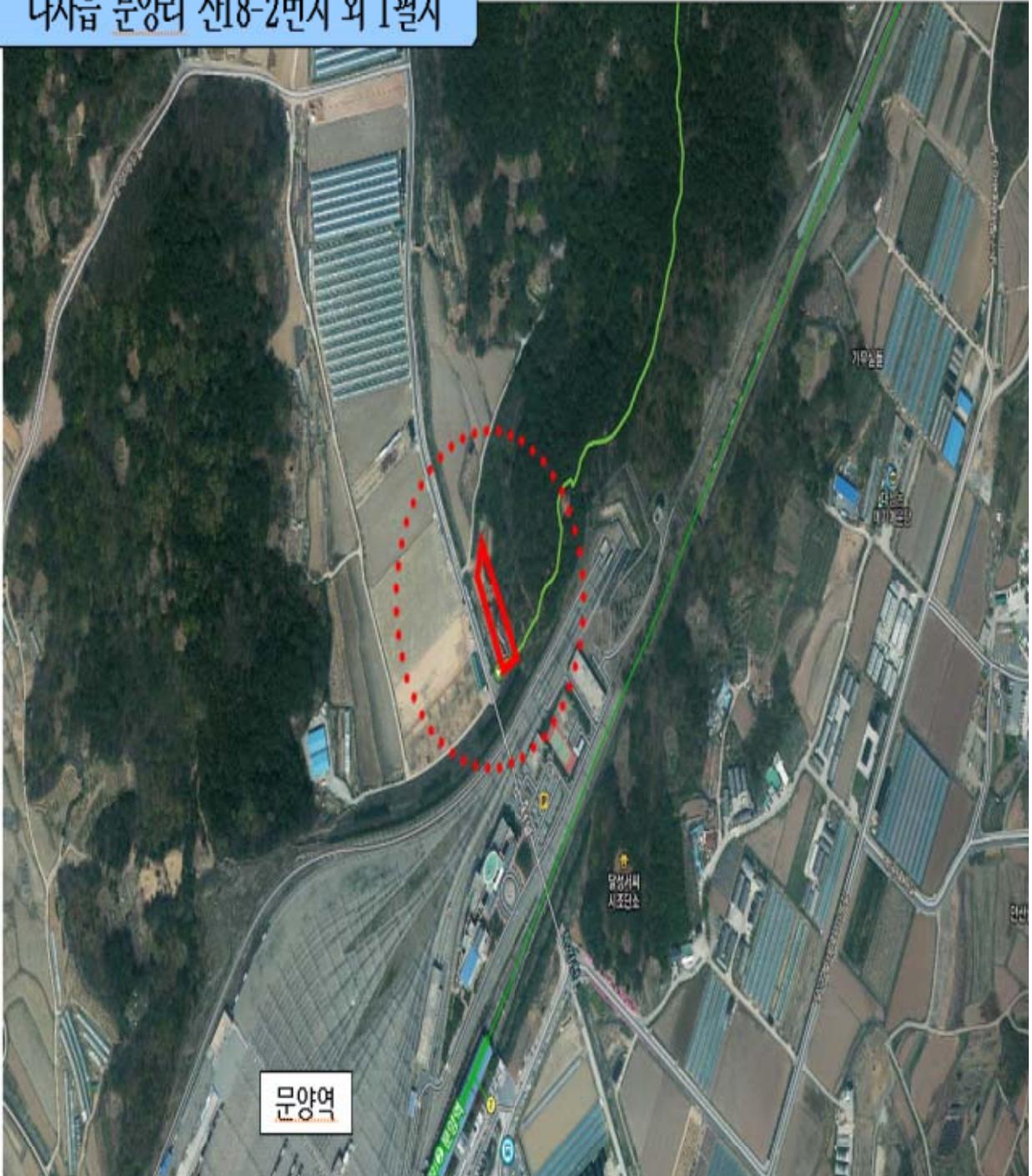


위 치 도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산18-2번지 외 1필지

다사읍 문양리 산18-2번지 외 1필지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산18-2번지 외 1필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 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2. (삭제 2009.5.29)
 -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